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목 차>

1.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적용대상 범위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3.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작 성 자	이름	김용석
	담당부서 (과)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직급	공업연구관
	국장	양홍석		연락처	043-870-5457
	과장	김은하		이메일	yskim16@mail.go.kr

2026. 07. 08.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양홍석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적용대상 범위		
	2.규제조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 2		
	3.위임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2의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7.13~2026.08.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 중 –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공포(`25.12.2.) ○ (정부 개입 필요성)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권고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상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설정 필요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7.규제내용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 소비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설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사이버물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 100만명 이상 ○ 이해관계자 :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 관련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약 8개사(예상)		
		이해관계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약 900만명(추정치)		
		관련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2개 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조치를 통해 국내 어린이 제품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12.67		112.6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0	0		
		주요내용	현행 안전성조사 체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행정 절차 도입이 요구되지 않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12.67		13.62
	15.규제정비 계획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 위)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 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 달 평균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 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 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 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 로 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현황)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은 현행 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됨
 -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어린이 제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60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결과, 자전거용 안전모 등 9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국가기술표준원, '25년)
-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 공포('25. 12. 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제조, 수입업자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으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없었음
- (문제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질적인 집행이 불가능함
-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부개입 필요성

-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정보 등의 삭제등 권고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상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설정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원안)
	내용	○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를 구체화 (국내 타법 유사 사례 준용) - 전년도 전체 매출액 : 1조원 이상 - 평균 월간 접속 국내 소비자 수 : 100만명 이상
규제대안2	대안명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완화안)
	내용	○ 소비자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만을 포함 - 평균 월간 접속 국내 소비자 수 : 100만명 이상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위험에 대응 가능 ○ 해외 직구 플랫폼의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잠재적 위험 대비 가능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규제 부담 증가
규제대안2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위험에 대응 가능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규제 부담 증가 ○ 소비자 규모만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공백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등	○ (일자) `26.6.23.(화) ○ (장소) 한국계량측정협회 ○ (방법) 대면회의	조치 대상이 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검토 추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력이 높은 상위 플랫폼을 모두 포함하되 이에 한전하지 않는 규제대안1을 선택함
- 규제대안2 선택시, 규제 대상이 3사로 한정되어 소비자 규모는 작지만 매출액이 큰 플랫폼이 제외되어 시장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	월간 이용자 수 추정치* (명)
-------------	-------------------

알리 익스프레스	909만
테무	827만
쉬인	283만

* 출처: 와이즈앱리테일, 삼정KPMG 경제연구원('25. 10. 기준)

3. 규제목표

- 국내 물리적 거점이 없는 사업자의 중개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내 소비자를 보호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조치 대상이 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를 국내 유사 타법 수준으로 구체화하여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특정한 권고 조치 대상의 범위를 정하므로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 리스트		권고 조치 대상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EU)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위험 관리에 대한 추가 의무를 부여함

<Regulation (EU) 2022/2065 (Digital Service Act)>

-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가 4,500만 명 (EU 인구의 약 10%)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Very large online platforms)에 적용 (제33조제1항)
 - * 지정 현황: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쉬인, 테무 등
-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보고 의무에는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 수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포함되어야 함 (전문 제65문단)
-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규정하는 위임입법을 채택하였으나 아직 마련되지 않음 (전문 제77문단)
-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에 관여하는 서비스 이용자 전반을 일컬으며, 단순 구매자만을 지칭하지 않음 (제3조제p목)

- (일본) 인터넷 몰 등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개정하여 조치를 강구함

*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어 서비스 제공, 일본 내 배송 가능 및 엔화 표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함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명령을 받아 취하는 조치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2조의2)
-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제조·수입업자의 회수 등 조치, 위해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제38조)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관련 국제기준 없음	—	국가별 자율적 관리

○ 타법사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대리인 지정 제

도를 마련한 타법의 경우,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음

구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정거래 위원회
근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	게임산업법 제31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	인공지능기본법 제36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0조의4
하위 법령	시행령 제32조의3	시행령 제18조의3	시행령 제19조	시행령 제30조의8	시행령 제정안 제28조	미개정
지정 기준	1개 이상 해당	1개 이상 해당	1개 이상 해당	모두 해당	1개 이상 해당	미개정
매출액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이용자	저장관리 중인 국내 정보주체의 수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건 이상	-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국내 이용자 수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총량의 100분의 1 이상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원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112.67 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원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12.67		112.6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12.67		112.67
기업순비용	112.67	연간균등순비용	13.62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알리익스프레스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군에 국내 법 전면 적용 및 위반 시 판매 금지 등 제재를 예고하며 현지화 정책을 발표함(전자신문, 2026)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은 현행 타법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 높음

* 제품안전기본법 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별도 협의 중

통신판매중개자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24. 6월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24. 4월 기준)
알리 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좌동
테무	제너럴에이전트	좌동
쉬인	법무법인 태평양	좌동
아마존닷컴	-	제너럴에이전트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시중 유통제품 및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이를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체계 구축 없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안전성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 가능하여, 현행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박성민 의원 '24.12 / 박성훈 의원 '25. 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5.1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공포(공포 '25.12, 시행 '26.12.)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부처 협의) : '26.7~8월
- 규제 심사 : '26.8~9월
- 법제처 심사 : '26.9~10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 '26.11월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부터 어린이의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원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12.67		112.6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12.67		112.67
기업순비용		112.67	연간균등순비용	13.62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현행 안전성조사 체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여, 추가적인 행정 절차 도입이 요구되지 않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원안)>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해외통신판매중개자
활동제목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 비용
비용항목	기타
비용	112,675,699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text{피규제 기업 수}(8\text{개}) \times \text{기업당 연간 투입 인원}(1\text{명}) \times \text{업무 소요 시간}(8\text{시간}) \times \text{시간당 임금}(35,486\text{원}) \times \text{연간 안전성 조사 실시 횟수}(3)(8 \times 1 \times 8 \times 35486 \times 3)$ $\text{피규제 기업 수}(8\text{개}) \times \text{기업당 연간 투입 인원}(1\text{명}) \times \text{업무 소요 시간}(8\text{시간}) \times \text{시간당 임금}(35,486\text{원}) \times \text{연간 안전성 조사 실시 횟수}(3)(8 \times 1 \times 8 \times 35486 \times 3)$
근거설명	○ 규제비용 식별 – (위해 우려 직접 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삭제등 조치 권고가 가능하여,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제6조의4) 또는 불복시 해제신청서 제출(제11조) 의무 발생 – 안전성조사는 중앙행정기관(국가기술표준원)이 시료를 구입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비용 부담 없음 – 안전성조사 결과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해외 판매업체(화주 등)가 부담(관세법 제160조제6항) –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조·유통 사업자가 아니므로 제품 수거등과 무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매출 감소 및 소비자 선택 제약) 본 개정안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이버몰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반송, 폐기하는 경우 매출감소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 가능함 – 또한,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 선택에

	일정 부분 제약이 발생하나, 소비자 안전성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25년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현황       - (규모) 연 3회 실시, 557개 모델 구입     - (결과) 부적합률 13.1%로 위해 제품 약 73건 적발       ○ 규제비용 산출       - 예상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 8개 플랫폼      *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라쿠텐, 아마존닷컴, 이베이, 타오바오, 쇼피           - `25년도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부적합률 13.2% 적용 - 금년 안전성조사 실시시 600개 모델 구입 예정으로, 위해 제품은 약 78건 적발될 것으로 예상 - 대상 8개 플랫폼당 평균 연간 적발 건수는 약 10건으로 계산되며, 안전성조사 1회당 약 3건으로 추정 - 적발된 3건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 후, 결과보고서를 1회 제출하여야 하므로 1인이 1일 내에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불복시 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는 결과보고서 제출과 규제비용이 동등할 것으로 판단 - (결과보고서 작성비용) 피규제 기업수 x 기업당 연간 투입 인원x 업무 소요 시간 x 시간당 임금 x 연간 안전성조사 실시 횟수 $= 8\text{개} \times 1\text{인} \times 1\text{일}(8\text{시간}) \times 35,486\text{원} \times 3\text{회}$ $= 6,813,312(\text{'25년 12월 기준})$ * 정보통신업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6,021,983원 및 전체근로시간 169.7시간 가정 (출처: 국가데이터처 정보통신업 임금) - (정보삭제 비용) 위해성 확인시, 피규제 기업이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할 때 발생하는 비용, 1인 1일 처
--	---

	리 가정 = 8개 x 1인 x 1일(8시간) x 35,486원 x 3회 = 6,813,312(‘25년 12월 기준) - 상기 규제비용 합산 = 6,813,312 x 2 = 13,626,624원
--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활동제목	해외제품 직접구매												
편익항목	안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25년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 소비자가 해외어린이제품 직접구매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												
	－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여 위해 제품 판매 차단 요청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적발 건수〉												
	<table><tr><td></td><td>1차 (여름용품)</td><td>2차 (위해우려품목)</td><td>3차 (겨울용품)</td><td>합계</td></tr><tr><td>어린이제품 부적합 건수</td><td>27</td><td>44</td><td>20</td><td>73</td></tr></table>					1차 (여름용품)	2차 (위해우려품목)	3차 (겨울용품)	합계	어린이제품 부적합 건수	27	44	20
	1차 (여름용품)	2차 (위해우려품목)	3차 (겨울용품)	합계									
어린이제품 부적합 건수	27	44	20	73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테마별 품목 모니터링 강화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실구매 가능한 제품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선정에 반영												
	－ 유통되고 있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중 판매량, 구매자 평가 수 등이 높은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 대상으로 선정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위해 제품 차단												

	- (판매 차단) 위해 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해외통신 판매중개자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판매 차단 요청 - (정보 삭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9조의2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를 삭제하므로 구매 불가 - (결과 공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위해 제품 유통 조기 차단 가능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 (피규제자) 본 개정안 제3조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시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가 포함될 수 있어 해외통신판매자가 안전관리 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 (국민)안전성조사 결과를 보도자료,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등에 공개하여 소비자가 위해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위해제품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2.규제조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조의 2 제2조의 3 제2조의 4		
	3.위임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7.14~2026.08.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 중 –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공포 (`25.12.2.) ○ (정부 개입 필요성) 위해성이 우려되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 제품안전 확보 필요		
	7.규제내용	○ 위해성이 우려되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를 위해 절차, 결과 조치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 100만명 이상 ○ 이해관계자 :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 관련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약 8개사(예상)		
		이해관계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약 900만명(추정치)		
		관련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2개 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정보 삭제 등 권고 조치를 통해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0	0		
	주요내용	현행 안전성조사 체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행정 절차 도입이 요구되지 않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이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5.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

현 행	개 정 안
	<u>증기관</u> <u>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u> <u>②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제품명, 상표·모델명(상표·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u> <u>2. 조사 수량</u> <u>3.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u>4. 제조 국가</u> <u>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명</u> <u>6.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u>7.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의 2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u>

현행	개정안
<신설>	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의3(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신설>	제2조의4(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를 따른다. ② 법 제6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조(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

현 행	개 정 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 ----- ----- ----- ----- -----.
1. 해당 <u>어린이제품</u> 의 제품명, 상표, <u>모델명</u> 및 제품 사진	1. --- <u>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u> ----- -- <u>모델명(상표, 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u>어린이제품</u> 의 제조 국가	3. --- <u>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u> ----- -
4.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u>연락처</u>	4. ----- ----- <u>연락처 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판매페이지 주소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5. <u>안전성조사</u> 결과의 내용	5. <u>안전성조사 또는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현황)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은 현행 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됨
 -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어린이 제품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60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결과, 자전거용 안전모 등 9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국가기술표준원, '25년)
-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 공포('25. 12. 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국내 제조,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 조치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으나, 위해성이 우려되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성조사 관련 규정이 없었음
- (문제점)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해 제품을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구매하여 어린이 제품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 기존 규제 없음
규제대안2	대안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내용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정보 삭제 및 공표 등 조치 실시
--	--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추가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어린이 제품 안전 관리 공백 지속
규제대안2	○ 위해 우려 및 확인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 구매 예방 가능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부담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등	○ (일자) `26.6.23.(화) ○ (장소) 한국계량측정협회 ○ (방법) 대면회의	조치 대상이 되는 해 외 통 신 판 매 중개자의 범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검토 추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일반 국민에게 위해 제품 정보 제공 및 온라인에서의 위해 제품 정보
삭제를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규제대안2를 선택함
- 규제대안 1 선택시, 제품안전 취약 계층인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는 문제가 유지될 수 밖에 없음

3. 규제목표

-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통해, 어린이 제품안전 사각지대 해소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내 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절차 및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함으로써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를 위해 절차 및 결과에 따른 조치를 명확화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필요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안전성 조사 절차 규정 등에 관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 없음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EU)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위험 관리에 대한 추가 의무를 부여함

<Regulation (EU) 2022/2065 (Digital Service Act)>

-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가 4,500만 명 (EU 인구의 약 10%)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Very large online platforms)에 적용 (제33조제1항)
 - * 지정 현황: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쉬인, 테무 등
-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보고 의무에는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 수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포함되어야 함 (전문 제65문단)
-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규정하는 위임입법을 채택하였으나 아직 마련되지 않음 (전문 제77문단)
-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에 관여하는 서비스 이용자 전반을 일컬으며, 단순 구매자만을 지칭하지 않음 (제3조제p목)

- (일본) 인터넷 몰 등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개정하여 조치를 강구함

*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어 서비스 제공, 일본 내 배송 가능 및 엔화 표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함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명령을 받아 취하는 조치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2조의2)
-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제조·수입업자의 회수 등 조치, 위해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제38조)

○ 타법사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은 위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관리 ('22.2. 시행) 중으로,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의, 위해정보 게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및 직접구매 해외 식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운용 중.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알리익스프레스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군에 국내 법 전면 적용 및 위반 시 판매 금지 등 제재를 예고하며 현지화 정책을 발표함(전자신문, 2026)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은 현행 타법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 높음

* 제품안전기본법 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별도 협의 중

통신판매중개자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24. 6월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24. 4월 기준)
알리 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좌동
테무	제너럴에이전트	좌동
쉬인	법무법인 태평양	좌동
아마존닷컴	-	제너럴에이전트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시중 유통제품 및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이를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체계 구축 없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안전성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 가능하여, 현행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박성민 의원 '24.12 / 박성훈 의원 '25. 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5.1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공포(공포 '25.12, 시행 '26.12.)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부처 협의) : '26.7~8월
- 규제 심사 : '26.8~9월
- 법제처 심사 : '26.9~10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 '26.11월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부터 어린이의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 유지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		
	2.규제조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6조의 2 제6조의 3 제6조의 4		
	3.위임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의 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7.14~2026.08.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 어린이제품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 중 -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제기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 공포 (`25.12.2.) ○ (정부 개입 필요성)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해외통신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 정보 삭제등 권고 및 권고 해제 절차,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공표 방법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 100만명 이상 ○ 이해관계자 :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 관련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약 8개사(예상)		
		이해관계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어린이제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약 900만명(추정치)		
		관련기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2개 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지속되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여 제품안전 취약 계층인 국내 어린이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u>법 제9조 제2항</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 <u>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2항</u> -----
1. 해당 <u>어린이제품</u> 의 제품명, 상표, <u>모델명</u> ,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	1. ---- <u>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u> ----- -- <u>모델명(상표, 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u>연락처</u>	2. ----- ----- <u>연락처 또는 해외통신 판매중개자명,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판매 페이지 주소,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3. (생략) <u><신설></u>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u>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u>)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u> 를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u>전자문서를 포함한다</u>)으로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u>법 제10조제1항제3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u>법 제11조제1항</u>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u>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u> 권고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u>수거등의 권고·명령</u> 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u>법 제11조제2항</u> 본문에 따라 <u>수거등의 권고·명령</u>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u>법 제9조제2항</u>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을 때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② <u>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수거등·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u>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법 제10조제1항제3호</u>----- ----- ----- --.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 ----- ----- <u>사업자,</u> ----- ----- ----- <u>사업자 또는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u> ----- ----- <u>수거등·삭제등의 권고·명령</u> ----- ----- -----. ② ----- ----- <u>수거등 또는 삭제등</u>----- ----- ----- ----- <u>법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u> ----- ----- -----.

현 행	개 정 안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현황)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은 현행 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됨
 -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위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60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결과, 자전거용 안전모 등 9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국가기술표준원, '25년)
- 이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 공포됨('25. 12. 2.)
- (문제점) 법률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정보 삭제등 권고 및 권고해제, 결과보고, 권고거부시 공표 등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정부개입 필요성

-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해 제품에 대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
	내용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절차 ○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결과보고

		○ 삭제등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 삭제등 권고 불이행시 공표 방법 - 제품명, 해외통신판매중개자명 등
--	--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위해 확인 제품의 국내 반입 방지를 통한 어린이 제품 안전 확보	○ 위해 확인 제품의 국내 반입이 유지되어 어린이 위해 우려 지속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등	○ (일자) `26.6.23.(화) ○ (장소) 한국계량측정협회 ○ (방법) 대면회의	조치 대상이 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검토 추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어린이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서 합리적 규제임

3. 규제목표

-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정보 삭제등 권고 및 권고해제, 결과보고, 권고거부시 공표 등 방법·절차를 통해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 국내 어린이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중인 어린이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절차 및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 어린이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위해 확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개념 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조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유연하게 분류 가능한 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조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와 관련 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내용 아님
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EU)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위험 관리에 대한 추가 의무를 부여함

<Regulation (EU) 2022/2065 (Digital Service Act)>

-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가 4,500만 명 (EU 인구의 약 10%)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Very large online platforms)에 적용 (제33조제1항)
 - * 지정 현황: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쉬인, 테무 등
-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보고 의무에는 EU 내 월평균 활성 서비스 이용자 수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포함되어야 함 (전문 제65문단)
-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규정하는 위임입법을 채택하였으나 아직 마련되지 않음 (전문 제77문단)
-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란 온라인 플랫폼에 관여하는 서비스 이용자 전반을 일컬으며, 단순 구매자만을 지칭하지 않음 (제3조제p목)

- (일본) 인터넷 몰 등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 개정하여 조치를 강구함

* 일본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어 서비스 제공, 일본 내 배송 가능 및 엔화 표시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함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명령을 받아 취하는 조치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2조의2)
- 거래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제조·수입업자의 회수 등 조치, 위해 발생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함 (제38조)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관련 국제기준 없음	—	—

○ 타법사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약처)은 위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을 관리('22. 시행)

중으로, 직접구매 해외식품 정의, 위해정보 게시, 국매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및 직접구매 해외 식품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운용 중.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알리익스프레스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군에 국내 법 전면 적용 및 위반 시 판매 금지 등 제재를 예고하며 현지화 정책을 발표함(전자신문, 2026)
-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해외 직구 플랫폼은 현행 타법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 높음

* 제품안전기본법 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별도 협의 중

통신판매중개자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24. 6월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24. 4월 기준)
알리 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	좌동
테무	제너럴에이전트	좌동
쉬인	법무법인 태평양	좌동
아마존닷컴	-	제너럴에이전트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시중 유통제품 및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이를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체계 구축 없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유사하여, 현재 체계를 활용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박성민 의원 '24.12 / 박성훈 의원 '25. 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5.11)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공포(공포 '25.12, 시행 '26.12.)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 예고(부처 협의) : '26.7~8월
- 규제 심사 : '26.8~9월
- 법제처 심사 : '26.9~10월
- 차관·국무회의 상정 및 공포 : '26.11월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종합결론

- 본 규제는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부터 어린이의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위해 우려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처리>